

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
일부개정법률안  
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36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6.

발 의 자 : 조계원 · 민병덕 · 안도걸  
소병훈 · 김문수 · 이광희  
이개호 · 임미애 · 최혁진  
김남희 · 서미화 · 복기왕  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시·도지사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.

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 2년 동안 주된 산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, 고용안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, 2년이 경과한 후 추가적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한계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의 산업·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

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8조).

##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지정기간, 지정절차”를 “지정절차”로 한다.

이 경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.

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·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&lt;후단 신설&gt;</p> <p>④·⑤ (생략) &lt;신설&gt;</p> <p>⑥ 그 밖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<u>지정기간, 지정절차</u>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8조(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 <u>이 경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.</u>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<u>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·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 <p>⑦ ----- -----<u>지정절차</u>----- -----.</p>